

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시험과목	
			6·7급	8·9급
행정	행정	일반행정	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	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	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개론
기술	통신 기술	통신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	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전기이론
	기계	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건축	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정보 기술	정보기술	자료구조론 정보보호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비고 :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렬의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시험과목을 결정한다.